

의안번호	2213300
의 퇴 인	정희용 의원
회 답 일	2025.10.31.
추계번호	25E5329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－ 농어민의 임대 농기계에 대한 석유류 간접세 면제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】

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106조의2(농업·임업·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감면 등) 제1항제1호, 제3항, 제5항제2호	○ 농어민 등이 임대한 농기계 등에 대해 부가가치세, 개별소비세, 교통·에너지·환경세, 교육세, 자동차세를 면제 - 면세유류 관리기관인 조합에 농기계등의 임대 현황을 신고(신고 내용의 변경이 있을 경우 30일 이내 변동내용 신고)한 경우에 해당함 - 적용기한: 2026년 12월 31일	-

II.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

1. 근거 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미첨부 근거 규정
1	안 제106조의2(농업·임업·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감면 등) 제1항제1호, 제3항, 제5항제2호	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
2. 상세 사유

- 농어민 등¹⁾이 임대한 농기계에 대해 부가가치세, 개별소비세, 교통·에너지·환경세, 교육세, 자동차세를 면제함에 따라 세수 감소가 예상됨(안 제106조의2제1항제1호)
- (현행) 농어민 등이 보유·신고한 농기계 등에 대해 부가가치세, 개별소비

1) 농민, 임업에 종사하는 자, 어민

세, 교통·에너지·환경세, 교육세, 자동차세를 면제하고 있음

- 다만, 현재 「농업용 면세유 공급 및 관리규정」에 열거된 농업인 등이 농업기계, 농업용 화물자동차, 농업용 로더(4톤 미만), 농업용 굴착기를 임차하는 경우도 면세유 배정 대상에 포함하고 있음²⁾

- 적용기한: 2026년 12월 31일

○ (개정안) 농어민 등이 임대·신고한 농기계 등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, 개별소비세, 교통·에너지·환경세, 교육세, 자동차세를 면제하는 내용임

- 현행과 마찬가지로, 면세유를 공급받기 위해서는 면세유류 관리기관인 조합에 농기계 등의 임대 현황을 신고해야 함
- 적용기한은 현행과 동일

□ 개정안의 세수효과를 추계하기 위해서는 개정안 통과 시 추가로 면제 대상이 되는 임대 농기계 등의 석유류(유종별) 사용량·공급가액 정보가 필요하나, 현재 관련 자료가 별도 집계되지 않는 등 해당 규모를 파악하기 어려워 세수효과를 합리적으로 추계하기 어려움

Ⅲ. 부대의견

□ 없음

2) 「농업용 면세유 공급 및 관리규정」 제8조(농업기계에 대한 배정) ① 관리 중앙회장 및 관리 조합장은 제7조의 연간 한도량 범위내에서 「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따라 등록된 영농 규모 및 재배 품목 등을 고려하고 별표의 기준을 적용하여 당해연도 석유제품별·농업기계별 연간 배정량을 산출하여 월별로 농업인 등에게 배정하며, 배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6. 관리 조합장은 별표 1에 해당하는 농업기계 중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 상의 농업기계 및 장비 임대업, 자동차 임대업, 건설 및 토목공사용 기계·장비 임대업에 해당하는 사업자, 지방자치단체장 및 「농업협동조합법」에 따른 조합, 조합공동사업법인 및 중앙회(같은 법에 따라 설립된 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를 포함한다)가 소유하는 농업기계, 농업용 화물자동차, 농업용 로더(4톤 미만), 농업용 굴착기 등을 농업인 등이 임차하여 사용할 경우 농업인 등이 제출한 임대차 계약서 등 관련 증빙서류를 확인하여 제6조에 따라 면세유류관리대장에 등록한 후 별표 2의 시간당 연료소모량과 별표 3의 연간 사용시간 범위 내에서 임차 기간별로 사용시간을 적용하여 면세유를 배정할 수 있다.

IV. 작성자

□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세제분석1과	김효경	박연서

□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김효경	02-6788-4647	hkkim@assembly.go.kr